

## 숲 유치원 운영 협약서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○○어린이집은 유아들이 놀이와 체험을 중심으로 지적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 강인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에서의 지속적인 놀이와 체험교육 활동을 하는 숲유치원에 대한 상호간 다음과 같이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○○어린이집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간에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해 시행하는 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합의이행)** ① 갑과 을은 숲유치원 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며, 숲유치원 운영 연간계획을 상호 협의하에 수립한다.

② 갑은 본 협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학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력을 지원한다.

③ 을은 갑이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지속적,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, 매월 활동사항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을은 숲유치원 이용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참가자의 연령은 7세로 하며, 숲유치원 이용시 어린이 인솔교사 등 안전관리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.

⑤ 을은 갑이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 관련 행사 또는 업무 추진 시 적극 협조한다.

제3조 (협약기간) 협약기간은 2015년 4월 개강일부터 2014년 11월 종강일까지로 정한다.

제4조(협약의 해지 또는 변경) ① 본 협약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없거나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본 협약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의 추가나 변경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제5조(영리활동 금지 및 권리의 제한) 을은 본 협약서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, 숲유치원 협약 취지 외의 영리목적에 이용 할 수 없다.

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5년 3월 31일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구청장 문 석 진

○○어린이집

원장 김 성 희